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이 2021년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제4조의2)

교육부장관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규정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협의 절차 (제4조의3, 제4조의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규정

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제4조의5, 제4조의6)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규정

라. 고등교육 재정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의7)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고등교육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1.3.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등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 3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 장관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 보고 후, 국회에 제출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시작연도에는 5개년 기본계획으로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8을 제4조의13으로 하고,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2까지로 하며,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 변경과 관련된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3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목적, 대상, 내용, 선정·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2. 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3. 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예산 및 중장기 지원 계획
4. 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 및 성과 관리 계획
5. 그 밖에 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시로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4(협의결과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5(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관련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성과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 재정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6(재정지원 성과분석) ① 교육부 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부처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긴급하게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업 성과 분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내용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 요청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내용 변경 결과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7(고등교육 재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 회장

3. 위원장이 위촉하는 학교의 장

4. 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전문가

5.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제·재정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2. 연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투자 방향

3.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4조의12(중전의 제4조의7) 제2항제3호 중 “제4조의6제7항”을 “제4조의11제7항”으로 한다.

제4조의8 앞에 “제2장 교직원”을 삭제한다.

제4조의13 앞에 “제2장 교직원”을 삽입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1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작성 지침은 이 영 시행연도에 한하여 계획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의 세부 운영방안은 이 영 시행연도에 한하여 4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원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교육	제4조의2(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등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 3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장관은 수립한 기본

재정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 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 재정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 보고 후, 국회에 제출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의 시작연도에는 5개년 기본계획으로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3(재정지원 사업 신설·

변경 협의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 변경과 관련된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3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목적, 대상, 내용, 선정·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 계획
2. 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3. 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예산 및 중장기 지원 계획
4. 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 및 성과 관리 계획
5. 그 밖에 사업 신설 또는 변

<신 설>

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
여 수시로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
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4(협의결과의 처리) ① 교
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
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는 협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5
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보
고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
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
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
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

<신 설>

하여야 한다.

제4조의5(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관련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성과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 재정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신 설>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6(재정지원 성과분석) ①

교육부 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부처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긴급하게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업 성과 분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사업 성과에

<신 설>

대한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내용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 요청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내용
변경 결과를 법 제7조의2제5항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조의7(고등교육 재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
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그 밖에 위

	<u>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2. 「<u>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u>」 및 「<u>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u>」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 <u>회장</u> 3. <u>위원장이 위촉하는 학교의 장</u> 4. <u>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전문가</u> 5. <u>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제·재정 분야의 전문가</u> ③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1. <u>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u> 2. <u>연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투자 방향</u> 3. <u>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안</u> 4. <u>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u>
<u>제4조의3</u> ~ <u>제4조의6</u> (생략)	<u>제4조의8</u> ~ <u>제4조의11</u> (현행 제4조의3부터 제4조의6까지와 같음)
<u>제4조의7</u>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	<u>제4조의12</u>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정 및 업무 위탁)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 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2. (생 략) 3. 제4조의6제7항에 따른 교육 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u>제2장 교직원</u> <u><신 설></u> <u>제4조의8</u> (생 략)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7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의11제7항----- ----- <u><삭 제></u> <u>제2장 교직원</u> <u>제4조의13</u> (현행 제4조의8과 같음)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u>제4조의12</u>-----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연 락 처	(044) 203 - 6501 (044) 203 - 6108